

통일세 도입 논란 /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배경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언급
 -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 할 때가 왔다.”
 - 통일비용과 조달방안이 현안으로 부상

2. 통일비용

-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으로 통일 이후 정책목표나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대략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
 - 찰스 윌프(국제경제 전문가, 미국 랜드 연구소):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통일비용을 1조7000억 달러(약 2006조원)로 추정
 - 북한을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면 남북한 통일 비용은 620억 달러(약 73조원)이면 가능
 - 한국조세연구원: 2011년 남북한의 급속한 통일을 전제로 향후 10년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 2009년 기준으로 한다면 127조원이 통일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

3. 통일세 등의 조달방안 도입

- 통일세 등의 조달방안 도입 논란
 - 통일 이후 대비에 효과적인가?
 - 구체적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 통일 이후 대비에 효과적인가?

○ 긍정적 효과

- 남한 소득 일부를 북한으로 이전시켜 통일 이후의 성장을 견인함
- 미리 세금을 마련해 통일 후 재정 건정성 악화에 대비
 - 통일 후 막대한 자금이 북한 사업에 투입될 것

○ 부정적 효과

- 추정된 통일 비용 편차가 큰 만큼 무작정 통일세를 걷는 것은 무모함
- 통일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통일에 임박해서 통일 방식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음

□ 구체적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 세금 부과(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법인세, 방위세 부활 등) : 통일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
 - 약간의 세율 인상만으로도 세수를 늘릴 수 있음
 - * 간접세로 조세 저항이 작음
 - * 넓은 세원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훨씬 작음
 -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낮음
 - * OECD 평균인 17%
 - 그러나 부가세율을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중산 서민층에 피해가 더해짐
 - *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상률을 적용받는 역진적인 구조
-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세율 상향 조정
 - 소득 형평성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좋음
 - 그러나 구매력을 가진 소득계층의 소비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이이익률을 낮춰 투자와 고용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방위세 부활
 -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

- 「법률 제2768호: 방위세법」(1975. 7. 16) 근거, 1976년에 처음 징수
-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
 - * ① 수입물품 가격의 25/1000
 - ②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액의 10/100 또는 20/100
 - ③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법인세액의 20/100 또는 25/100
 - ④ 상속·증여세액의 20/100
 - ⑤ 특별소비세액의 30/100
 - ⑥ 주세액의 10/100
 - ⑦ 전화사용료의 10/100
 - ⑧ 균등할 주민세의 10/100 또는 25/100
 - 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20/100
 - ⑩ 자동차세의 30/100
 - ⑪ 등록세의 20/100
 - ⑫ 마권세의 20/100 등이다.

○ 기금 조성 : 통일기금

- 조세나 국채 발행보다는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쉬워 보임
 - 남북협력기금(연간 1조1000여억원) 불용액 등부터 활용하는 방안
 - * 남북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 *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관련 정책자금
- 통일비용에 턱없이 모자람

○ 복권 발행 : 통일복권

- 정부 입장에서 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조달 수단
-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 (painless tax)
- 사행심을 조장

- 막대한 통일 재원을 감안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음
 - 복권을 발행한다고 무한정 판매가 늘어나지 않음(비강제성)
 - 우리나라 복권기금 사업은 복권 판매수입에서 당첨금과 발행 및 판매비용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연간 9000억~1조원 정도
- 통일복권을 판다면 다른 복권 수입이 줄어들 것

○ 국채 발행 : 통일국채

- 손쉽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란 점에서 차입과 다를 게 없음
 -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 공채를 발행하는 것과 비슷
 - 서울시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5월 '복구 공채'를 발행한 적도 있음
- 국채는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인구 동태나 경제력을 감안해야 함

○ 개발 차관

- 국제기구 및 관계국 차관 도입
- 국채 발행에 앞서 국제기구 차관이나 여러 나라가 지원하는 재건기금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국이 겨안을 북한은 하나의 큰 개발 시장이 될 것
 - 이라크신탁기금: 이라크 재건을 위해 여러 나라가 공여한 돈으로 조성,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그룹(UNDG)이 각각 하나씩 운영을 맡고 있음
- 금리가 제로거나 아주 낮은 것이 장점
- 문제는 통일한국이 국제기구의 돈을 쓸 수 있느냐
 - 한국은 현재 원조 공여국으로 분류
 - 따라서 국제기구 자금을 갖다 쓰는 데는 북한이란 실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국유재산 매각

- 남북한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문제는 북한의 공장이나 시설의 경우 팔기가 쉽지 않다는 점

- 남북한이 합치는 순간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경쟁력을 잃기 때문

4. 논의 문제 제기

-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부과, 기금 조성, 복권 발행, 국채 발행, 개발 차관, 국유재산 매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 통일비용의 막대한 수준에 비해 작은 수입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조달방안 제외
 - 기금 조성, 복권 발행
 - 국유재산 매각

□ 세대 내 효율 과세 vs. 형평 과세

- 부가가치세(간접세) vs. 소득세와 법인세(직접세)
- 저소득층 vs. 고소득층

□ 세대 간 형평 과세 문제

- 세금 부과 vs. 국채 발행, 개발 차관
- 현 세대부터 부담 vs. 미래 세대 위주로 부담

<첨부>

<<통일세 도입 관련 논의 요약>>

1. 통일세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되어 그 후 통일비용과 조달방안에 대한 논의 가속화됨.
2.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조속한 통일을 할 경우 조세연구원 127조원 예상
3.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 부과(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법인세, 방위세 부활 등), 통일기금 조성, 통일복권 발행, 통일국채 발행, 개발차관 도입.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함.
4. 또 세대내 효율과세와 형평과세, 세대간 형평과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조달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결론
5.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 과연 통일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됨.
6. 독일통일 20주년 관련, 통일비용과 조달방안에 대한 연구논문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